

「2016년도 출자·출연 동의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1. 13(금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2. 18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18(금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2차 본회의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가.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

- 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비 지원

○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비 출연

- 관광·문화·특산품 등 지역자원의 홍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

○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출연

-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

-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
 -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
- 강원테크노파크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
 -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인력양성,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, 기업경쟁력 제고 위해 사업비 출연

4.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평창군이 2016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은 5건으로
 -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강원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중장기 비전 및 지역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수행
 -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비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관광·문화·특산품 등 지역자원 홍보사업을 추진하고
 - 평창장학회 장학금 사업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수행하고 있음.

- 지방세발전기금은

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· 및 평가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
-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은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인력양성,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위 사업에 대하여 출연대상, 사업개요, 출연의 필요성,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건의 사업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